# 수출입 폐기물 요건확인 및 인계·인수 요령

2025. 12.

한국환경공단
폐기물수출입관리부

# Ⅰ. 개요

## 1. 지침의 목적

○ 폐기물의 **부적절한 수출입 방지와 이동 및 처리 정보 제공을 통해 수출입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**

## 2. 주요내용

① 수출입폐기물 요건확인 방법 및 제출서류, ② 수출입 통관을 위한 인계·인수 정보 입력 기한 및 내역, ③ 장애 발생 및 인계·인수 정보 수정 요령

## 3. 적용범위

○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요건확인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 관련 업무

**< 업무 절차별 주요 검토내용 >**

| 절 차 | 검 토 내 용 |
|---|---|
| ▪ 요건확인 신청 검토・승인 | ▪ 수출입신고시 제출서류를 허가・신고서와 대조・검토<br>- 폐기물사진, 선하증권(B/L), 보증금 또는 보험증서 등<br>- 수출시 선하증권(B/L) 대신 상업송장(CI) 및 P/L로 대체<br>- 일본, 우크라이나에서 수입 시 방사능 간이측정결과서 첨부<br>▪ 제출서류 미비 시 통관보류(요건확인 불승인) |
| ⇓ | |
| ▪ 인계・인수 내용 입력 | ▪ 배출자는 폐기물 운반 또는 인계 전 반드시 인계서 작성<br>- 배출・운반・처리자별 입력내용 및 기한 숙지 |
| ▪ 현장정보 전송 | ▪ 폐기물 이동・처리 시 반드시 현장정보 전송<br>- (현장정보) 위치정보, 계량값, 영상정보 |
| ⇓ | |
| ▪ 사후관리 | ▪ (인계・인수) 처리끝난 인계서 수정 및 장애발생 시 대처요령 |

## 4. 시행시기 : ‘2025.12.1

# Ⅱ. 지침 세부 내용

## 1. 수출입폐기물 요건확인

### 1 신청 대상 및 방법

○ **(정의)**「폐기물국가간이동법」적용받는 폐기물을 수출입할 때마다 적법한 허가·승인받은 것임을 증명(관세법 제226조제1항)

※「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참조

○ **(대상)**「폐기물국가간이동법」제5조의2의 수출입 자격을 갖춘 자로써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 신고하려는 자

○ **(방법)** 요건확인은 관세청 UNI-PASS(https://unipass.customs.go.kr)에서 신청하고, 공단 Allbaro시스템(https://www.allbaro.or.kr)에서 검토·승인

- 수입제한 예외품목* 중 HSK코드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요건확인 신청 시 해당 내역 입력

* 「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」 참조

예) 폐타이어 수입 시 "대형타이어" 별도 입력

### 2 신청 서류 제출 기한 : 수출입 신고 10일 전까지*

* 「폐기물국가간이동법」 제6조제6항, 제10조제6항 및 제18조의2제3항

### 3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

○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

- 포괄로 인·허가 받은 자가 수입할 때마다 제출해야 함
- 수출입 규제 또는 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수출국에서 선적일 이전 30일 이내에 촬영한 것*이어야 함

* 인·허가 시 제출했던 사진이 아닌 선적된 폐기물의 사진이어야 하며, 반드시 촬영일자가 표기되어야 하고, 일자가 표시되는 앱 사용을 권고함

○ 선하증권(B/L, Bill of Lading)

- 인·허가서의 품목, 수출국, 수출입자 및 주소, 하역항 등과 동일해야 함

- 수입신고서의 B/L번호, 수출입자 및 주소, 선적일 또는 신고일, 품목 및 중량 등과 동일해야 함
  (단, 3자 간의 계약으로 인해 B/L상 수출입자가 상이할 시 입증 가능한 서류 추가 필요)

○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

- 포괄로 인·허가 받은 자가 보험을 분할 가입한 경우 수입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며, 국내 하역일을 보험 개시 시점으로 하여 4개월 이상이어야 함

○ 방사능 간이측정결과서*

* 「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」 별지 제1호 서식

-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수입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된 폐기물*을 국내 반입하려는 경우, 매 통관 시마다 제출해야 함

* 국제 원자력기구(IAEA)의 국제 원자력사고 고장 등급(INES) 7등급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(일본, 우크라이나)의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 있는 폐기물

- 폐기물의 ①10m 이격, ②1m 이격, ③표면에서 측정해야 하며, 측정방향은 각 지점별로 동일하고 각 지점마다 다른 방향이어야 함

- 폐기물 표면에 가까워질수록 평균 방사선 값이 증가*하거나 폐기물 표면 방사선 값이 환경방사선량(0.3㎲v/h) 이상인 경우 반려

* 단, 평균 방사선 값이 증가하더라도 모든 값이 환경방사선량 미만일 경우 승인

○ 포괄허가·신고 변경자료

- 포괄수입허가·신고 당시 제출내용과 운반계약, 처리계획 등이 달라진 경우 제출해야 함

## ④ 수출신고 시 제출 서류

○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와 대부분 동일

○ 다만, 선하증권(B/L)을 상업송장(CI, Commercial Invoice) 및 포장명세서(P/L, Packing List)로 대체 가능

- 인·허가서의 품목, 수입국, 수출입자 및 주소, 하역항, 처리업체 등과 동일해야 함

- 수출신고서의 수출입자 및 주소, 선적일 또는 신고일, 품목 및 중량 등과 동일해야 함

○ 방사능 간이측정결과서 제출 불필요

### 5 수출입신고 시 제출 서류 미비에 따른 통관 보류(불승인)

○ 요건확인 신청 시 신고서 기재사항 오류 및 첨부서류*가 미비할 경우 관세법 제2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**통관 보류**

* "3 **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**" 또는 "4 **수출신고 시 제출 서류**"

- 통관 지연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 발생(**세관 보세창고 이용료 증가** 등)
- 특히 **수입폐기물**의 경우 출항 이후 보완할 수 없는 **방사능 간이측정결과서**, **선적 30일 전 촬영 폐기물 사진**은 반드시 **확인**해야 함

## 2. 수출입폐기물 인계·인수 내용 입력*

*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[별표 2]

### 1 중요사항(배출자)

○ **요건확인 신청 건이 승인되면** 수입자는 세관장에서, 수출자는 사업장에서 **폐기물 운반차량 출발 전 반드시 인계서를 작성해야 함**

◇ (Allbaro시스템) 수출입폐기물관리 > 인허가관리 > 인허가신청이력관리 → 조회된 인허가필증의 "상세" 체크박스 클릭 시 **요건확인일·확인량 및 인계서 작성현황 조회 가능**

○ **(입력기한)** **운반 또는 인계 전***에 확정 또는 예약 입력**

* 폐기물배출자(수입자 또는 수출자)는 **운반자에게 인계번호(확정 또는 예약입력 시 자동 부여)를 전달**해야 함(「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」 제11조제5항)

** 예약 입력 시 **(수입)** 재활용·처분자의 수입폐기물 인수 후 **2일 이내**, **(수출)**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**2일 이내**에 **확정 입력**해야 함
(단, 수출의 경우 요건승인번호는 선적 후 2일 이내 확정 입력)

○ **(입력내용)** 폐기물의 종류 및 양, 인계일, 운반 차량번호, **요건승인번호 등**(**예약 입력** 시 **폐기물 종류, 인계일** 입력 **필수**)

## 2 (수입) 운반 및 재활용·처분 정보

○ **(운반자)** 수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**2일 이내** 입력

* 적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임시보관장소 경유한 경우 재활용·처분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 입력 가능

- **(입력내용)** 수입자명, 운반차량번호, 인수량 및 인계량, 인수일 및 인계일 등

○ **(재활용·처분자)** ①**인수정보**는 폐기물이 재활용·처분장에 도착한 날로부터 2일 이내, ②**재활용·처분정보**는 재활용·처분한 날부터 2일 이내 입력

- **(입력내용)** ①**인수정보**는 인수일자, 인수량 및 계량값 등, ②**재활용·처분정보**는 처리량 및 처리일자

## 3 (수출) 운반 및 처리 정보

○ **(운반자)** 수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**2일 이내** 입력

* 적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임시보관장소 경유한 경우 보세구역 반입 후 2일 이내 입력 가능

- **(입력내용)** 수출자명, 운반차량번호, 인수량, 인수일 등

○ **(선적~수입국)** ①선적 후 2일 이내, ②수입국에서 하역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, ③수입국에서 통관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입력

- **(입력내용)** ①선적일, 선박번호, 선사명, 선적량, 선하증권(B/L) 사본 및 수입국, ②하역항 및 하역일자, ③통관량 및 통관일자

## 4 장애 발생 시 대처 요령

○ **(사유)** Allbaro시스템 오류,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사용 불가

○ **(장애 발생 시)** ARS, 유·무선 전화 등 대체입력방법 사용하여 인계·인수 정보 입력하고, 공단에 대체입력 사유, 대체입력 기간 등을 3일 이내 통보해야 함

○ **(이후 조치사항)** ①정상입력 가능해지면 정상가동 사실을, ②대체

입력 기간 연장하게 되면 기간연장 사유를 공단에 통보해야 함

- **(Allbaro시스템 장애)** 장애기간 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·인수 정보를 시스템 사용 가능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력해야 함

## 5 처리끝난 인계·인수내용 수정

○ Allbaro시스템에 필요 서류 첨부하여 수정 요청 후 관할 환경청(검토기간 7일 이내) 또는 공단(지역본부·지사) 승인

| 관할 환경청 승인 | | 공단(지역본부·지사) 승인 | |
|---|---|---|---|
| 수정구분 | 필요서류 | 수정구분 | 필요서류 |
| 폐기물 종류(대분류) 변경 | 필증(위수탁계약서), 계량증명서 | 폐기물 종류·성상 변경 | 필증(위수탁계약서), 계량증명서 |
| 위탁량 변경 | 계량증명서 | 차량 변경 | 계량증명서 |
| 처리일자 변경 | 처리시설가동일지 | 처리방법 변경 | 필증(위수탁계약서) |
| 처리실적 취소 | 취소 증빙 자료 | 요건승인번호 변경 | 수출입신고필증 정정 확인서 (세관 발행) |
| 인계일자 변경 | 계량증명서 | 인계자명 | 재직증명서 |
| 배출자 변경 | 필증(위수탁계약서), 계량증명서 | 실명인증 상호 및 주소 변경 | 필증(위수탁계약서), 계량증명서 |
| 운반·처리자 변경 | 필증(위수탁계약서), 계량증명서 | 공동처리회원사 변경 | 공동처리수거대장 (내역) |
| 인계서 삭제 | 삭제 증빙서류 | | |

## 6 기타 사항

○ **(휴일 제외)**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*, 토요일, 근로자의 날은 인계·인수정보 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

*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및 제3조

## 3. 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

### 1 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

○ **(정의)** 폐기물을 수출·수입 또는 처리할 때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함께 폐기물의 이동 및 처리에 관한 현장정보(위치정보, 계량값, 영상정보)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,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(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5)

※ (시행시기) 건설폐기물('22.10) → 지정폐기물('23.10) → 사업장일반, 수출입폐기물('24.10)

○ **(대상)** 폐기물을 수출, 수입 또는 처리하는 자

- ▸「폐기물국가간이동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
- ▸「폐기물국가간이동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
- ▸「폐기물국가간이동법」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자
- ▸ 폐기물취급자·무역업체·해외수출자 간 3자 계약에 의한 수입대행업체
- ▸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

○ **(제외대상)**

- ▸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(시험·연구목적)
- ▸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1항 본문 단서의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

### 2 현장정보의 종류

○ **(위치정보)** 운반 차량의 이동 경로(위도와 경도)를 시간단위로 표기한 값

※ 견인차와 피견인차로 구성된 컨테이너 운송차량은 위치정보 대신 사업장과 수출입항 출·도착 시의 컨테이너 봉인장치(봉인번호 포함) 및 주변사진 등록

○ **(계량값)**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*에서 측정한 계량값

*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한 자

○ **(영상정보)** 진입로, 계량시설 및 보관장소 정지영상

※ 견인차와 피견인차로 구성된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경우, 진입로 및 계량시설의 영상정보는 차량의 전면부 및 후면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

## 3 수출입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

○ **위치정보**

- (전송대상) 폐기물 수집·운반자(컨테이너 운반은 수출입자)
- (전송방법)

① 폐기물 수집·운반: 차량에 설치된 GPS단말기로 자동 전송

② 컨테이너 운반: 위치정보 대체 자료(사진)를 시스템에 입력*

* **(입력기한)** 수출컨테이너가 수출항에 도착한 날, 수입컨테이너가 사업장에 도착한 날부터 2일 이내 전송

■ (수출) 1) **출발 사업장**에서 컨테이너 봉인장치(일련번호 포함) 및 주변사진
2) **도착 수출항**에서 컨테이너 봉인장치(일련번호 포함) 및 주변사진

■ (수입) 1) **출발 수입항**에서 컨테이너 봉인장치(일련번호 포함) 및 주변사진
※ 1)이 곤란한 경우, 해외 수출자의 사업장 또는 수출항에서 촬영한 사진도 인정
2) **도착 사업장**에서 컨테이너 봉인장치(일련번호 포함) 및 주변사진

○ **계량값**

- (전송대상) 계량시설 설치 의무자*가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측정한 계량값

*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한 자

- (전송방법) 계량시설로 측정한 계량값을 자동 기록·전송

○ **영상정보**

- (전송대상) 폐기물을 수출·수입하거나,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

① 진입로에 진입하는 폐기물 운반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. 다만,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 진입로 영상정보는 제외

② 계량시설에서 계량하는 폐기물 운반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

③ 보관장소에서 보관 중인 폐기물의 양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 다만, 보관장소 영상정보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제외

- (전송방법) 영상정보 전송장치를 통해 자동 기록·전송

## 4 현장정보 전송장치 종류 및 설치

| 구분 | 전송장치 | |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| 장비종류 | 설치장소 | 대수 | |
| 수집·운반업(위탁운반), 수출입하는 자 | 차량용 GPS단말기 | 수집운반차량 | 1대 | 컨테이너 운반 시 사진으로 대체 (자가운반에 해당) |
| 의무대상 사업장 (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, 처리하는 자) | 자동전송단말기(PC) | 사무실 | 1대 | 자동전송프로그램 설치 필요 |
| | 영상정보처리기기 (CCTV) | 진입로 | 1대 이상 | 컨테이너 운반 시, 전면과 후면에 설치 필요 *계량시설은 설치의무자에 한함 |
| | | 계량시설* | 1대 이상 | |
| | | 보관장소 | 1대 이상 |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 |

※ GPS 단말기 판매업체 리스트, CCTV, PC 상세규격 및 자세한 설치방법 등은 홈페이지(현장정보관리시스템) 참고

※ 현장정보 전송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, 제외신청서 제출·승인 후 전송 제외 가능

## 5 차량용 GPS 단말기

| 구분 | | 전용단말기형 (펌웨어형) | | 프로그램설치형 (SW구동형) | 이동통신단말기 (어플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고정형 | 탈부착형 | | |
| 배출자 | 자가 운반차량 | O | O | O | O |
| 수집·운반업, 수출입하는 자 | 전용차량 | O | X | X | X |
| | 임시차량 | O | O | O | △* |
| 제품예시 | |  |  |  |  |

*** △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임시차량만 사용 가능**

| | |
|---|---|
| 전용단말기형 (펌웨어형) | 하드웨어에 GPS 프로그램이 설치된 '일체형 제품'으로 화면없이 전원공급만으로 작동하며, 전원공급 조작여부에 따라 고정형과 탈부착형으로 구분<br>※ (고정형) 휴즈박스 등 내부 전원선에 연결, (탈부착형) 시가잭, USB 등 |
| 프로그램 설치형 (S/W구동형) | 공단이 제작·배포한 전송프로그램을 안드로이드 OS 5.1 이상 버전의 태플릿PC, 네비게이션 등 단말기에 설치 |
| 이동통신단말기 (어플) | 공단이 배포한 '현장정보' 어플을 앱마켓에서 내려받아 설치 |